



제 325 회 금 산 군 의 회 2 차 정 례 회
심 사 보 고 서

심 의 안 건

1. 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150호
----------	-------

2024. 11. 27.(수)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4. 11. 14.
- 나. 제 안 자 : 심정수 의원 등 4인
- 다. 회 부 일 : 2024. 11. 14.
- 라. 상 정 일 : 2024. 11. 25. (제3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4-355호)’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 자격 구체화(안 제3조)
 - 기존 모호한 자격요건과 공모를 통한 모집에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의장이 위촉하도록 개정

-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 마련(안 제4조)
 - 기존 : 연임 제한 규정 없음 → 변경 : 1회에 한하여 연임
-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심정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8조에서 제80조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147호
----------	-------

2024. 11. 27.(수)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4. 11. 14.
- 나. 제 안 자 : 정기수 의원 등 4인
- 다. 회 부 일 : 2024. 11. 14.
- 라. 상 정 일 : 2024. 11. 25. (제3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4-355호)’에 따라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 검직신고와 관련한 미비점들을 개선하여 검직신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검직으로 인한 영리행위 발생 시 검직 사임 권고 가능(안 제6조제4항 신설)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안 제7조제3항 신설)
 - 대상자 관리 강화 및 주기적 확인 규정화
-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 마련 (안 제8조 신설)
 -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별표 신설)
-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 검직신고와 관련한 미비점들을 개선하여 검직신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정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의장은 검직으로 인한 영리행위 발생 시 검직 사임을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의장은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을 규정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146호
----------	-------

2024. 11. 27.(수)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4. 11. 14.
- 나. 제 안 자 : 최명수 의원 등 4인
- 다. 회 부 일 : 2024. 11. 14.
- 라. 상 정 일 : 2024. 11. 25. (제3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4-355호)’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 1) 상패·부상 수여 시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 마련(안 제9조제2항)
 - 「공직선거법」에 위반·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규정
 - 2)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담보(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 제척·회피 규정 마련
- 3) 포상 취소 절차 마련(안 제15조)
- 조문 재정비
 - 1) 조례 제명 변경
 - 기존 :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 → 변경 :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
 - 2) 표창 종류 재규정(안 제4조)
 - 공로장 추가(안 제8조)
 - 3) 별지 서식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최명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에서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로장을 추가하여 표창 종류를 재규정 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상패 및 부상 수여 시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정부 표창 규정」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149호
----------	-------

2024. 11. 27.(수)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4. 11. 14.
- 나. 제 안 자 : 정옥균 의원 등 4인
- 다. 회 부 일 : 2024. 11. 14.
- 라. 상 정 일 : 2024. 11. 25. (제3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4-355호)’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임기 기간 및 연임 제한 규정 마련(안 제 4조제6항)
 - 기존 : 심사위원 임기 기간 및 연임 제한 규정 없음 →

- 변경 : 심사위원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장·부위원장 역할 규명(안 제4조제4항)
- 자치법규명 변경에 따른 근거 조례 명칭 변경(안 제7조)
- 출장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안 제10조)
 - 기존 : 15일 → 변경 : 30일
- 용어·서식 정비 및 자구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정옥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6항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출장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실에 맞게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고, 그밖에 용어와 서식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였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4조의2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127호
----------	-------

2024. 11. 27.(수)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4. 11. 12.
- 나. 제 안 자 : 심정수 의원 등 4인
- 다. 회 부 일 : 2024. 11. 14.
- 라. 상 정 일 : 2024. 11. 25. (제3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입법·법률 고문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및 보궐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 신설(안 제6조)

- 기존 : 고문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없음 →
변경 : 고문 임기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가능
- 고문이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자문 사항 명시(안 제8조)
-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 기준 변경(안 제10조)
 - 기존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따라 지급 →
변경 :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를 적용하여 지급
- 별지 서식(제1호·제2호·제3호) 정비 및 별표(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삭제
- 자구 수정 및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심정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제10조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151호
----------	-------

2024. 11. 27.(수)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4. 11. 14.
- 나. 제 안 자 : 정옥균 의원 등 4인
- 다. 회 부 일 : 2024. 11. 14.
- 라. 상 정 일 : 2024. 11. 25. (제3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의원의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연구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시행 중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권익위 의결 제2024-257호)에 따른 개선 사항을 담아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의 변경 : 기존 :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 변경 : 「금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조문의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의(안 제3조)
-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연구활동 범위와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연구활동비 등의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연구단체 등록부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금산군 의원의 정책개발연구 활동 장려 및 연구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시행 중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옥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144호
----------	-------

2024. 11. 27.(수)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4. 11. 14.
- 나. 제 안 자 : 정기수 의원 등 4인
- 다. 회 부 일 : 2024. 11. 14.
- 라. 상 정 일 : 2024. 11. 25. (제3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 (2024. 10. 30.)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 변경(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 및 부서 명칭 수정 등 일부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정옥균 의원님께

서 대표 발의 하여 제출된 안건임.

- 민선 8기 후반기 현안사업 및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국 체제의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 등에 맞춰 금산군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71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125호
----------	-------

2024. 11. 27.(수)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4. 11. 11.
- 나. 제 안 자 : 최명수 의원 등 4인
- 다. 회 부 일 : 2024. 11. 14.
- 라. 상 정 일 : 2024. 11. 25. (제3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 (2024. 10. 30.)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당초 : 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변경 : 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 재지정(안 제2조)
- 자구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최명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여 제출된 안건임.
- 조례 제명에서 “관계공무원” 을 “관계공무원 등” 으로 개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하 조례 본문에서도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 이는 위원회별로 안전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업무 수행 시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밖에 「지방자치법」 제51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